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7)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8. 7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4839호, 시행 2017.7.26.)에서 위임된 내용을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반영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2 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제2항 규정에 없는 “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” 항목 삭제(안 제2조)
-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2 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제3항에 따라 “기금의 용도” 정비 및 “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” 항목 신설(안 제3조)
- “기금운용계획안”은 매년 11월 군 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12월 의결됨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기일 내 군 의회 의결은 불가함으로 “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” 항목 삭제(안 제9조)
- “기금운용계획안”과 “기금결산보고서”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군 의회 “심의” 문구 삭제(안 제9조, 안 제11조)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(결산보고서의 작성)
제1항에 따라 작성함으로 “기금결산 보고서 첨부 서류” 삭제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(2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- (3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(4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.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영향평가 :
- (3) 부패영향평가 :
- (4) 규제심사 :
- (5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함.
 - (나) 예고결과 :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제7호 “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” 을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광고물 등의 정비” 를 “옥외광고산업의 진흥” 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중 “경관개선” 을 “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제3호 중 “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” 을 “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중 제4호 부터 제6호를 제5호부터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제4호 “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” 을 신설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” 를 “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” 로 한다.

제11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” 를 “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” 로 하며, 제11조제3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) 제1호 ~ 제6호(생 략) <u>7.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</u>	제2조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) 제1호 ~ 제6호(현행과 같음) <u>7. (삭 제)</u>
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 <u>1. 광고물 등의 정비</u> <u>2. 경관개선</u> <u>3.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</u> <u>4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</u> <u>5.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 라인 개발사업</u> <u>6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	제3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. <u>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</u> <u>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</u> <u>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</u> <u>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</u> <u>5.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</u> <u>6. 간판 디자인과 제작설치 가이드 라인 개발사업</u> <u>7.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</u>
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~ ②(생 략)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 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	제9조(기금운용 계획) ① ~ ②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군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<u>을 받아야 한다.</u> 제11조(기금결산) ①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기금결산의 개황과 분석에 관한 서류 2.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. 현금과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<u>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	제11조(기금결산) ①(현행과 같음) ②(삭 제)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 의회에 제출하여 <u>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
---	--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6조

제6조(결산보고서의 작성) ①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안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.

1. 수입
 - 가. 수입계획액
 - 나. 징수결정액
 - 다. 수납액
 - 라. 불납결손액
 - 마. 미수납액
2. 지출
 - 가. 지출계획액
 - 나. 전년도 이월액
 - 다. 지출계획현액
 - 라. 지출액
 - 마. 다음 연도 이월액
 - 바. 불용액